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6. 2 선고 2019가단754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대구지방법원 2021. 11. 17 선고 2021나313641 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6. 2 선고 2019가단7543 판결

전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마

담당변호사 오경석

피 고 B

변론종결 2021. 4. 14.

판결선고 2021. 6. 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9,265,93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 7. 아래 범죄사실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고단1841, 2015고단634(병합), 2030(병합), 2091(병합)호 사기 등 사건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는데, 아래 범죄사실에는 원고가 피고를 기망하여 피고로부터 2012. 12. 10.부터 2013. 7. 22.까지 합계 60,480,000원의 투자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 C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 감사이다.

피고인들은 2012. 10.경부터 2014. 4.경까지 대구 동구 E 7층에 있는 'D' 본사 사무실 및 서울 강남구 F 2층에 있는 'D' 서울본점 등 전국 10여개의 지사 사무실에서, G을 비롯한 영업사원인 피해자 62명에게, "태블릿PC를 개발 중인데, 이 태블릿PC를 판매할 경우 일시에 회원 50만 명을 모아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 그 회원 1인이 H교재를 구입하면 15,000원, I를 구입하면 20,000원, 태블릿PC를 구입하면 25,000원을 각 주주에게 배당할 것이니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 좋다. 또한 팀장예치금으로 330만원을 입금하면 팀장의 자격을 주고, 팀장이 회원 1명을 유치하면 인당 10만원을 지급하며, 30명을 유치하면 예치금 330만원 중 회사비용 10만원, 소개비 15만원을 제외하고 300만원 전액을 돌려주고, 과장예치금 명목으로 3,300만원을 입금하면 정규직 과장 자격을 주고 영업 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정기적으로 급여 150만원을 지급하고 예치한 다음 달부터 매월 300만원씩 지급하여 1년 안에 예치금을 모두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구체적인 태블릿PC 개발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62명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는 한편,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는 기존의 투자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구조로 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만약 계속적으로 투자를 받지 못하면 자금이 고갈되어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원금과 수당을 지급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수익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2013. 1. 21.부터 같은 해 11. 4.까지 29회에 걸쳐 예치금 및 주식대금 명목으로 합계 71,91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2명의 피해자로부터 2012. 10. 16.경부터 2014. 4. 18.경까지 합계 1,538,758,95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와 C을 공동피고로 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60,48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가단12172호로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와 C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아니하여 2015. 9. 10. 무변론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민사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민사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신청을 하였고, 이후 위 강제집행절차에서 39,265,939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등기부상으로만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감사로 등재되었을 뿐 실제로는 영업사원에 불과하였고, 피고는 D에 투자한 돈보다 더 많은 액수의 돈을 D로부터 회수하였으므로 어떠한 손해를 입은 것이 없다. 피고는 이러한 사실을 잘 알면서도 원고를 상대로 허위 주장을 하여 이 사건 민사판결을 받은 후 이를 집행권원으로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신청을 하여 39,265,939원을 배당받기까지 하였다. 확정판결에 기한 권리라 하더라도 그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하는바, 피고의 이 사건 민사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배당금 상당액인 39,265,93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 1) 소송당사자가 허위의 주장으로 법원을 기망하고 상대방의 권리를 해할 의사로 상대방의 소송관여를 방해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실체의 권리관계와 다른 내용의 확정판결을 취득하여 그 판결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정의에 반하고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것이어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위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가 각하되어 확정되는 등으로 위 확정판결이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위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취득한 채권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하여 반환을 구하는 것은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고, 다만 위와 같이 위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이상 위 강제집행은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다32905 판결 등 참조).
- 2)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피고를 기망하여 피고로부터 투자금 60,48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형사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 판단과 동일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이 사건 민사판결의 결론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허위의 주장으로 법원을 기망하고 원고의 권리를 해할 의사로 원고의 소송관여를 방해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실체의 권리관계와 다른 내용의 확정판결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한편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D로부터 일정 금액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 돈이 피고가 투자금을 회수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돈은 피고가 D로부터 급여, 예치금에 대한 수수료 등 명목으로 지급받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으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현정